

[] 개시

[] 중단

[] 폐지

[] 재개

신고서

사업, 저장소 사용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※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(영업소 포함), 집단공급사업,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신고인	상호:		
	대표자:	생년월일:	
	사무소 소재지:	전화번호:	
	사업소 소재지:		

신청 세부 내용	허가사항	허가나 등록의 종류:	
		허가나 등록 번호:	허가나 등록 연월일:
	개시 · 중단 · 폐지 · 재개 연월일		
	사 유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[]개시 · []중단 · []폐지 · []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첨부서류	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